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민형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6180

발의연월일: 2024. 12. 3.

발 의 자:민형배・이정문・윤준병

이수진 • 조계원 • 김문수

이강일 · 정동영 · 이언주

홍기원 · 신정훈 · 민홍철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법령 위반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시정기회를 부여해 행정처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.

현재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등은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영업정지, 허가·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.

이때 모든 행정처분에는 시정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. 이 때문에 경미한 법령 위반에도 강력한 처분이 부과되는 등 제재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

이에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등의 행정처분 이전 관련사업 자 시정명령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. 보다 합리적인 행정처분 으로 게임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(안 제35조제5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5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제1 항부터 제3항까지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영업정지, 허가·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	개 정 안
제35조(허가취소 등)	1 ~ 4	제35조(허가취소 등) ① ~ ④
(생 략)		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	⑤ 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
		지사・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
		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른 허
		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
		한 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
		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
		하더라도 영업정지, 허가·등록
		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기
		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
		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
		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.
<u>⑤</u> (생 략)		<u>⑥</u> (현행 제5항과 같음)